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서울시를 위해 함께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2조 ‘청소년 정의’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(청소년 정의)를 보면 ‘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’라고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의가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-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‘청소년 정의’를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소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려고 일부개정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  
-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  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천만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